

의안번호	2212305
의 퇴 인	윤영석 의원
회 답 일	2025. 8. 28.
추계번호	25A448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수도권역밖 이전 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
적용 과세가액 한도액 인상－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						
1	안 제30조의6 (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 세특례)	○ 수도권역 밖 이전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과세 가액 한도액 인상 － 수도권역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나 내국 법인이 수도권역 밖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가 액 한도액 2배 인상 ※ 참고: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과세가액 한도 － 증여세 과세특례: (과세가액-10억원 공제) × 10% 세율(120억 초과 20%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과세 가액 적용 한도</td><td>부모 기업기간 10년 이상 ~ 20년 미만</td><td>300억원</td></tr> <tr> <td></td><td>부모 기업기간 20년 이상 ~ 30년 미만</td><td>400억원</td></tr> <tr> <td></td><td>부모 기업기간 30년 이상</td><td>600억원</td></tr> </table>	과세 가액 적용 한도	부모 기업기간 10년 이상 ~ 20년 미만	300억원		부모 기업기간 20년 이상 ~ 30년 미만	400억원		부모 기업기간 30년 이상	600억원
과세 가액 적용 한도	부모 기업기간 10년 이상 ~ 20년 미만	300억원									
	부모 기업기간 20년 이상 ~ 30년 미만	400억원									
	부모 기업기간 30년 이상	600억원								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0조의6 (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 세특례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역 밖 이전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
례 적용 과세가액 한도액을 2배 인상하는 경우 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
생할 수 있음

- 그러나 수도권역 밖 이전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과세가액 한도액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수도권역 밖 이전기업의 가업승계 시점과 가업용 자산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 최근 3년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결정현황을 살펴보면, 2022년 410건(7,458억원), 2024년 508건(9,729억원)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,232건(2조 1,404억원)의 가업상속공제 발생

[표 2] 최근 3년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결정현황

(단위: 건, 억원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건수	410	314	508	1,232
과세가액	7,458	4,217	9,729	21,404

자료 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연도.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